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 4)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30일 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다.

3. 이용자 관리

- 1) 정기적으로 내방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한다.
- 2) 사망, 타기관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월 이용료(본인부담률)

2020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20분 이상	37,780	210분 이상	51,630
60분 이상	22,310	150분 이상	42,930	240분 이상	55,490
90분 이상	29,920	180분 이상	47,460		

-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 *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함.
- *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 *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60분)으로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됨.
-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급탕기, 호스 등 제반 장비가 모두 탑재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용 교통비 등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한다.
- 2)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을 유지·관리한다.
-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개인정보 누설하지 않는다.(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한다.
-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음.)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 변경에 의해 급여비용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2) 변경 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2)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공단제공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개요)



두리케어복지센터
02-458-4411